

스페셜올림픽코리아 상벌위원회 규정

2014.12.16. 제정

제1장 총 칙

제 1조 (설치 근거 및 명칭)

스페셜올림픽코리아 정관 제 7장 제 34조에 따라 상벌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며 그 명칭은 스페셜올림픽 코리아 상벌위원회(이하 상벌위원회)로 한다.

제 2조 (목적)

상벌위원회는 시·도지부 및 종목별 경기단체(종목별위원회)와 개인의 공적에 대한 표창과 징계를 함에 있어서 적정성과 공정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3조 (적용)

이 규정은 스페셜올림픽코리아, 시·도지부, 경기단체(종목별위원회) 및 그 단체에 속한 개인에게 적용한다.

제 4조 (기능)

제 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사항을 검토·심의한다.

1. 표창에 관한사항
2. 징계에 관한사항

제 5조 (구성)

① 위원회는 다음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1. 위원장 1인
2. 위원 10인 이내 (위원장 포함)
3. 간사 1인 (해당 업무 담당자)

② 위원장 및 위촉위원은 회장이 임명하며, 부위원장은 스페셜올림픽코리아 사무총장으로 하며 위원은 각 부 부장으로 한다.

③ 위촉위원은 관련 사안에 따라 전문지식을 갖춘 자를 위촉 한다.

제 6조 (위원의 직무)

-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.
- ② 위원은 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직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다.

제 7조 (위원의 임기)

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기간으로 하며 위촉 위원은 2년으로 한다.

제 8조 (회의소집)

회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위원회를 소집한다.

제 9조 (의결 정족수)

위원회는 재적위원과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며 징계에 관한 사항은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그 외 사항은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 10조 (제척 및 회의)

위원은 본인 또는 본인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뚜렷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·의결에 참여 할 수 없다.

제 11조 (긴급한 업무의 처리)

위원회에서 심의 할 사항 중 그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할 때에는 이를 서면결의에 부의 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차기 위원회에서 추인을 받아야 한다.

제2장 표창

제 12조 (표창 대상)

국내 스포셜올림픽 활동의 보급, 육성 등 스포셜올림픽 발전에 공헌한 단체(기관) 및 개인에게 수여한다.

제 13조 (표창의 종류)

- ① 표창의 종류는 정부포상과 스포셜올림픽코리아 자체 표창으로 구분한다.
- ② 정부포상은 상훈법 및 정부 표창규정에 따라 추천한다.

제 14조 (구비서류)

표창을 추천 할 때에는 별지 서식의 추천자 명단과 공적조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
제3장 징 계

제 15조 (상벌위원회 설치의무)

징계업무를 관장·처리하기 위하여 경기단체(종목별위원회)와 시·도지부는 해당 단체의 실정에 맞게 상벌위원회를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.

제 16조 (증거우선의 원칙)

위원회는 징계를 할 경우 징계혐의자에 대하여는 그 혐의를 입증할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에만 징계하여야 한다.

제 17조 (징계기관의 분류)

- ① 스포셜올림픽코리아는 경기단체(종목별위원회)가 재심 후 의결한 징계사항 및 시·도지부가 직접 징계하고 재심 후 의결한 사항에 대한 이의신청기관으로써 징계를 최종 결정한다.
- ② 징계사건에 대한 관할이 불분명한 경우 상벌위원회에서 징계관할 위원회를 결정한다. 이 경우 해당 단체 상벌위원회는 스포셜올림픽코리아의 결정사항을 성실히 따라야 한다.

제 18조 (징계의 종류)

- ① 징계는 비위의 종류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.
 1. 중징계는 자격 정지, 출전정지 또는 제명으로 한다.
 2. 경징계는 경고 및 근신으로 한다.
- ② 징계대상자별 징계는 다음과 같다.
 1. 선수 및 보호자: 제명, 자격정지, 출전정지, 견책
 2. 지도자: 제명, 자격정지, 출전정지, 견책
 3. 단체 및 회원: 제명, 해임, 자격정지, 직무정지, 견책
 4. 심판: 제명, 자격정지, 출전정지, 강등, 견책
- ③ 대회 중 발생한 경기장 질서 문란 행위에 대한 징계는 따로 정한다.

제 19조 (징계대상)

-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대하여 조사하여 징계 심사를 할 수 있다.
 1. 비위 사실이 있다고 신고 되거나 이첩된 경우
 2. 비위 사실이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그 내용이 중대하다고 인정할 경우
 3. 승부조작, 심판편파판정, 경기진행방해 등 각종 대회 중 발생한 경기장 질서 문란 행위
 4. 단체운영과 관련하여 회계부정, 직권남용, 직무해태 등 비위사건
-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단체 사무국 직원에 대한 징계는 해당 단체 인사위원회 등에서 자체적으로 조치한다.

제 20조 (출석요구)

- ① 위원회는 징계혐의자나 관련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.
- ② 징계혐의자가 출석 통지를 받고 출석하지 않는 경우 진술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.

제 21조 (심문 및 진술)

- ① 위원회는 징계혐의자나 관련자에게 혐의 내용에 관한 심문을 행하고 필요할 경우 관계인의 출석이나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 할 수 있다.
- ② 징계혐의자에게 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며, 징계혐의자는 서면 또는 구술로서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사실을 진술하거나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.

제 22조 (징계의 양정)

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심사함에 있어 징계혐의자의 비위 유형, 비위 정도 및 과실의 경중과 평소의 소행, 인품, 공적, 개정의 정 등 기타 정상을 참작 할 수 있다.

제 23조 (징계의 감경 및 해제)

- ① 위원회는 징계를 받은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징계를 감경, 사면 또는 복권 할 수 있다.
 - 1. 「상훈법」에 따른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자
 - 2. 장관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
 - 3. 스포셜올림픽코리아 회장 표창을 받은 자
- ② 제 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를 감경, 사면, 복권 할 수 없다.
 - 1. 직무와 관련한 금품 수수 비위
 - 2. 성폭력, 선수폭력
- ③ 스포셜올림픽코리아에서 의결한 징계에 대한 감경, 사면, 해제, 복권은 스포셜올림픽코리아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.
- ④ 사면이라 함은 징계를 받은 자에 대하여 징계의 집행을 면제하는 것을 말하며, 복권은 징계로 인한 자격정지 등에 대하여 예전의 권리를 회복하는 것을 말한다.

제 24조 (징계의 통보)

- ① 위원회가 징계 심사를 하였을 경우 즉시 이를 문서로서 징계혐의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- ② 징계통보서에는 징계사유와 내용은 물론 징계 재심사 및 이의신청 기한과 방법 등을 명시하여 통보하여야 한다.

제 25조 (재심사요구)

- ① 징계혐의자는 징계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 재심사 요구의 취지 및 이유와 입증 방

법 등을 명시하여 재심을 요구 할 수 있다.

② 재심사 요구는 징계통보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.

③ 재심사 요구를 받은 위원회는 요구 일로부터 30일(1회에 한하여 30일 연장가능) 이내에 제 20조 및 제 21조의 절차에 따라 재심사 하여야 한다.

제 26조 (재심 심의 결과 통보)

① 재심사 요청에 대한 결과는 당해 단체의장 및 징계혐의자와 그 소속 단체의 장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.

제 27조 (징계의 의결 및 효력 발생)

이의신청에 대한 상벌위원회의 결정은 최종 결정이며, 그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.

제 28조 (징계의 보고)

상벌위원회가 심사한 징계사항은 물론 해당 단체 이사회가 의결한 징계와 징계의 해제 또는 경감에 대하여는 즉시 스포셜올림픽코리아에 보고하여야 한다.

부칙

제 1조 이 규정은 이사회 승인을 얻는 날로부터 시행한다.

제 2조 경기 단체, 종목별위원회 및 시·도지부의 상벌 규정의 제정·운영 시까지는 본 규정을 적용한다.

주요학력 및 경력

(19) 년 월 일	(20) 이 력	(21) 년 월 일	(22) 이 력

과거 포상기록(훈장·포장·표창별로 기록)

(23) 년 월 일	(24) 내 용	(25) 년 월 일	(26) 내 용

(27) 공 적 사 항

신 고 서

신 고 자	성 명			
	전화번호		직 업	
	주 소			
피신고자 (신고대상)	성 명			
	전화번호		직 업	
	주 소			
신고취지 및 이유				
증거서류				
비 고				

위와 같이 피신고자(신고대상)의 불공정 행위를 신고합니다.

20
위 신고자 (인 또는 서명)

스페셜올림픽코리아 상벌위원회 귀 하